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11. 12. 20.

행정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가. 제출일자 : 2011년 11월 14일

나. 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 : 2011년 11월 16일

라. 상정일자 : 제164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행정위원회(2011.12.12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행정국장 박정희)

가. 제안이유

-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 중 일부 조항 개정에 따라 「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」이 통보되어 우리 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구청장 여비 지급 시 ‘공무원 여비 규정’상의 적용 항목 변경
(안 제3조)
- 상위법령인 ‘공무원 여비 규정’ 중 지방공무원에는 해당되지 않는 규정에 대한 명시(안 제4조)
-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, 띄어쓰기 등 순화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이 현 영)

- 이 개정 조례안은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서 준용되고 있는 대통령령인 「공무원 여비규정」중 국외 숙박비 등 일부 조항이 2011. 2. 9일 일부개정되어 2011. 7.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우리구 공무원의 여비제도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.
- 주요내용을 살펴보면
 - 안 제3조제1항에 구청장의 여비 지급 구분을 행정안전부에서 통보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에 따라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1의 제1호 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하도록 함,
 - 안 제4조에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지방공무원에 해당되지 않는 규정 등을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개정함.
 - 그 밖에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일부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함.
- 이 개정 조례안은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 개정 및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행정안전부에서 통보된 「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」을 근거로 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적절한 개정으로 보여 지며, 그 밖의 부분은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법체계나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 87 호
----------	--------

제출연월일 : 2011.11.
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「공무원 여비 규정」 중 일부 조항 개정에 따라 「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」이 통보되어 우리 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구청장 여비 지급 시 ‘공무원 여비 규정’상의 적용 항목 변경(제3조)

나. 상위법령인 ‘공무원 여비 규정’ 중 지방공무원에는 해당되지 않는 규정에 대한 명시(제4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근거 :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, 「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합의사항 없음

라.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붙임 :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(이하 “공무원”이라 한다)”을 “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”으로 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”을 “출장이 필요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(이하 “공무원”이라 한다)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”을 “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”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구청장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제1호 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대하여”를 “대해서”로,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한다.

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”를 “준용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제8조의2 중 국내 여비(운임과 숙박비)의 결제와 정산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.
2. 제17조, 제22조, 제26조 및 제29조 중 “소속장관”은 각각 “구청장”으로 본다.
3. 제17조제1항 단서 중 “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”는 준용하지 아니한다.

4. 제18조제1항 단서 중 “공용차량 관리규정 제4조 및 별표 1”은 “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용차량관리규칙 제4조 및 별표 1”로 본다..
5. 제24조제5항 중 “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”은 “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”으로 본다.
6.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.
7. 제29조제1항 중 “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” 및 같은 조 제2항 중 “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” 및 같은 조 제4항 중 “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”는 없는 것으로 보며,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.
8.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1 중 “「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 관한규정」”은 “「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」”으로, “「공무원보수규정」”은 “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”으로, “「계약직공무원 규정」”은 “「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」”으로 “일반계약직공무원”은 “개방형 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	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서울특별시영 등포구지방공무원 (이하 “공무원”이라 한다)</u> 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 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<u>서울특별시 영 등포구 지방공무원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제2조(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) ①상 시 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<u>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(이하 “월액여비”라 한다)를 일괄지급할 수 있다.</u>	제2조(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) ① ----- <u>출장이 필요한 서울특별시 영 등포구 지방공무원(이하 “공무원” 이라 한다)</u> 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 위-----.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, 월지급한도 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.	③----- ----- <u>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</u> ----- -----.
제3조(여비의 지급구분) ①구청장은 <u>부구청장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 아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제1호 또 는 제2호를 적용한다.</u>	제3조(여비의 지급구분) ①구청장은 <u>공무원여비규정 별표 의 제 호 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.</u>
②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의 각호를 적용한다.	②----- <u>대해서</u> ----- ----- <u>각 호</u> -----.
제4조(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) 공무원	제4조(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) -----

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,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.

1. 제17조、제22조、제26조、제28조 및 제29조 중 “소속장관”은 각각 “구청장”으로 본다.
2. 제17조제1항 단서 중 “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”는 없는 것으로 본다.
3. 제18조제1항 단서 중 “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”는 “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 제3조”로 “동규정〔별표 1〕”은 “동규칙〔별표 1〕”로 본다.
4. 제24조제5항 중 “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”은 “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”으로 본다.
5.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.
6. 제29조제1항 중 “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”및 동조제2항 중 “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”는 없는 것으로 보며,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.
- 7.〔별표 1〕 제1호의 해당공무원란 1 중 “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

----- 준용할

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.

1. 제8조의 2 중 국내 여비 (운임과 숙박비)의 결제와 정산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.
2. 제17조, 제22조, 제26조 및 제29조 중 “소속장관”은 각각 “구청장”으로 본다.
3. 제17조제1항 단서 중 “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”는 준용하지 아니한다.
4. 제18조제1항 단서 중 “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별표 1”은 “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용차량관리규칙 제4조 및 별표 1”로 본다.
5. 제24조제5항 중 “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”은 “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”으로 본다.
6.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.
7. 제29조제1항 중 “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

등에관한규정”은 “지방연구직및지도
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”으로
동호의 해당공무원란 4 중 “공무원
보수규정”은 “지방공무원보수규정”
으로, 동표 제 3호의 해당공무원란
1 중 “전문직공무원규정”은 “「지방
계약직공무원규정」”으로 한다.

〈신 설〉

여” 및 같은 조 제2항 중 “행정안
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
견을 들어” 및 같은 조 제 4항 중
“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
관과 협의하여”는 없는 것으로 보
며,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
니한다.

8.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
중 “「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
용등에관한규정」”은 “「지방 연
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
관한 규정」”으로, “「공무원보수
규정」”은 “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”
으로, “「계약직공무원규정」”은
“「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」”으로
“일반계약직공무원”은 “개방형 직
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”
으로, “전문계약직공무원”은 “개방
형 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
전임계약직공무원”으로 한다.